

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(제16조제1항관련)

1. 삭제 <2015.8.19.>

2. 화상센터

가. 시설기준

시 설 내 용		개 수	단위면적 (㎡)	총면적 (㎡)	비 고
응급진료실	환자분류소	1	30	30	·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
	소 생 실	2	20	40	·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·소규모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는 것
	간 호 사 실	1	20	20	·소생실 전면에 설치할 것
	환 부 세 척 실	1	20	20	
	응 급 환 자 진 료 구 역	1	165	165	·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
	검 사 실	1			·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·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, 동맥혈가스분석,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
	방 사 선 실 ·일반촬영실	1	30	30	
	수 술 실 및 치 치 실	1	40	40	
응급진료실외의 장소	수 술 실	1	60	60	·화상환자 전용으로만 이용하고, 중환자실과 인접되게 설치할 것
	중환자실의 병 상	8	10	80	·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·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
	입원실의 병상	30	4.3	130	
	멸균처치실의 병상	2	16	32	·화상처치용 침상 및 멸균시설
	화상처치실	1	60	60	·샤워기 및 소용돌이꼭지(Whirlpool tab)가 설치되어 있을 것

	회의실 및 도서실	1	60	60	
기타	원무행정실·의사당직실·보호자대기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되, 그 기준은 별표 7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에 의한다.				

(주)

1. 위의 개수·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
2. 검사실 및 방사선실중 CT촬영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나. 인력기준

인 력	인 력 기 준	비 고
1) 의사	·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 ·일반외과 전문의 1명 이상 ·성형외과 전문의 2명 이상	·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
2) 간호사	·15명 이상	
3) 응급 구조사	·구급차 1대당 2명 이상	
4) 그 밖의 인력	·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·구급차 1대당 운전기사 2명 이상	·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·별표 5의2 제3호다목라) 또는 별표 7 제3호다목3)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보안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·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
다 . 장비기준

장 비	소 생 실	응 급 실
제 세 동 기	1	1
인 공 호 흡 기	1	1
주 입 기 (Infusion Pump)	2	3병상당 1

이 동 X - 선 촬 영 기	1	
C T 촬 영 기	1	
산 화 질 소 (N ₂ O) 마 취 기	1	
환 자 감 시 장 치	1	5병상당 1
이 동 환 자 감 시 장 치	1	
부 착 형 흡 인 기	1병상당 1	1병상당 1
급 속 혈 액 가 온 주 입 기 (Rapid infusion warmer)	1	
보 온 포 (가 온 · 냉 각 기 능 공 유)	1	
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: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		
구급차 :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. 다만, 법 제44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		

3. 심혈관 센터

가. 시설기준

시 설 내 용		개수	단위면적 (m ²)	총면적 (m ²)	비 고
응급진료실	환자분류소	1	30	30	·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
	소 생 실	2	20	40	·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·소규모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것
	간 호 사 실	1	20	20	·소생실 전면에 설치
	응 급 환 자 진 료 구 역	1	165	165	·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
	검 사 실	1			·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·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, 동맥혈가스분석,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
	심 초 음 파 실	1	20	20	·소생실 옆에 위치할 것
	방 사 선 실 ·일반촬영실	1	30	30	

	수술실 및 처치실	1	40	40	
응급진료실외의 장소	수술실	1	50	50	·종합병원의 수술실로 갈음할 수 있음
	중환자실의 병상	10	10	100	·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·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
	입원실의 병상	30	4.3	130	
	혈관촬영실	1	60	60	·응급실에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
	심장검사실	1	60	60	·심초음파·부하검사 및 심전도검사 등을 할 수 있을 것
	회의실 및 도서실	1	60	60	
기타	원무행정실·의사당직실·보호자대기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되, 그 기준은 별표 7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에 의한다.				

(주)

1. 위의 개수·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
2. 검사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나. 인력기준

인 력	인 력 기 준	비 고
1) 의사	·응급의학 전문의 2명 이상 ·심장내과 전문의 3명 이상 ·소아과 심장 전문의 1명 이상 ·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명 이상	·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
2) 간호사	·15명 이상	
3) 응급 구조사	·구급차 1대당 2명 이상	
4) 그 밖의 인력	·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·구급차 1대당 운전기사 2명 이상	·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·별표 5의2 제3호다목라) 또는 별표 7 제3호다목3)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보안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

		력을 갖춘 것으로 봄 ·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--	--	---

다 . 장비기준

장 비	소 생 실	응 급 실
제 세 동 기	1	1
인 공 호 흡 기	1	1
주 입 기 (Infusion Pump)	2	3병상당 1
이 동 X - 선 촬 영 기	1	
C T 촬 영 기	1	
심 초 음 파 검 사 기	1	
환 자 감 시 장 치	1	5병상당 1
이 동 환 자 감 시 장 치	1	
부 착 형 흡 인 기	1병상당 1	1병상당 1
급 속 혈 액 가 온 주 입 기 (Rapid infusion warmer)	1	
보 온 포 (가 온 · 냉 각 기 능 공 유)	1	
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: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		
구급차 :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. 다만, 법 제44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		

4. 독극물센터

가. 시설기준

시 설 내 용		개수	단위면적 (㎡)	총면적 (㎡)	비 고
응 급 진 료 실	환 자 분 류 소	1	30	30	·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
	소 생 실	2	20	40	·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·소규모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
	간 호 사 실	1	20	20	·소생실 전면에 설치할 것
	응 급 환 자 진 료 구 역	1	165	165	·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

	위 세 척 실	1	20	20	·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
	고 압 산 소 실	1	50	50	
	검 사 실	1			·시설기준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·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, 동맥혈가스분석,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
	방 사 선 실				
	·일반촬영실	1	30	30	
	·CT촬영실	1	60	60	
응급진료실외의 장소	수술실 및 처치실	1	40	40	
	중환자실의 병상	10	10	100	·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·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
	입원실의 병상	30	4.3	130	·30병상 이상을 설치할 것
	독극물 정보센터	1	60	60	
기타	회의실 및 도서실	1	60	60	
	원무행정실·의사당직실·보호자대기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되, 그 기준은 별표 7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에 의한다.				

(주)

1. 위의 개수·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
2. 검사실 및 방사선실중 CT촬영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

나. 인력기준

인 력	인 력 기 준	비 고
1) 의사	·응급의학 전문의 3명 이상 ·중독 전담의 2명 이상	·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또는 중독전담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
2) 간호사	·15명 이상	
3) 응급 구조사	·구급차 1대당 2명 이상	

4) 그 밖의 인력	·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·구급차 1대당 운전기사 2명 이상	·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상주할 것 ·별표 5의2 제3호다목라) 또는 별표 7 제3호다목3)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보안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·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------------	--	--

다 . 장비기준

장 비	소 생 실	응 급 실
제 세 동 기	1	1
인 공 호 흡 기	1	1
주 입 기 (Infusion Pump)	2	3병상당 1
이 동 X - 선 촬 영 기	1	
C T 촬 영 기	1	
초음파검사기(심초음파 검사 기능)	1	
산 부 인 과 진 찰 대	1	
산 화 질 소 (N ₂ O) 마취기	1	
환 자 감 시 장 치	1	5병상당 1
이 동 환 자 감 시 장 치	1	
부 착 형 흡 인 기	1병상당 1	1병상당 1
급 속 혈 액 가 온 주 입 기 (Rapid infusion warmer)	1	
보 온 포 (가 온 ·냉 각 기 능 공 유)	1	
고 압 산 소 탱 크	1	
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: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		
구급차 :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. 다만, 법 제44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		

5. 소아센터

가. 시설기준

1) 소아 응급실 전용시설 기준

- 소아 응급실은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를 위한 전용시설로 성인을 위한 응급실과 구분되도록 설치·운영되어야 함.
- 감염병 환자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은 소아 응급실의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음.

시 설	시 설 기 준	비 고
가) 환자 분류소	· 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·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 것 ·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	감염의사환자를 위 한 마스크 등 보호장 구를 비치할 것
나) 처 치 실	· 최소 20㎡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, 각각의 내변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· 감염방지를 위해 손세척이 가능할 것	
다) 응 급 환 자 진 료 구 역	· 각 병상마다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추어 것 ·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어 것 · 5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	병상 간 간격은 1.5m 이상을 확보할 것
라) 중증응 급 환 자 진료구역	·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구역으로 구성하고 무정전 시스템을 갖추어 것 · 각 병상마다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추어 것 · 산소, 음압, 고압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어 것 · 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	
마) 음압격 리 병 상	·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되고 필터링된 급기· 배기 및 음압제어,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 것 ·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· 보호구 장비 및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설을 갖출 것 · 1병상 이상 확보할 것	일반격리병상은 중 증응급환자 진료구 역 병상 수에 포함 됨
바) 일 반 격 리 병 상	·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을 것 ·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	

	·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(CCTV) 설비를 갖출 것 · 1병상 이상 확보할 것	
사) 소아응급환자 전용중환자실	· 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·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 중환자실 규정을 준수할 것 ※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우 응급전용중환자실 중 2병상을 소아응급환자전용으로 배정할 수 있음	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하에 입원·퇴원을 결정할 것
아) 소아응급환자 전용입원실	· 6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· 병상당 4.3m²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	
자) 보호자 대기실	보호자 대기실 내에 별도의 수유실을 구비할 것	

2) 의료기관 시설기준

시 설	시 설 기 준	비 고
가) MRI실	· 신체 전 부위의 촬영이 가능할 것 ·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	· 24시간 운영할 것 · 응급환자에 우선 사용되도록 할 것
나) 검사실 등	· 소아환자의 초음파 검사가 가능할 것 · 연령별 장비를 구비하여 소아환자의 소화기 내시경 검사가 가능할 것	
다) 혈액은행	ABO 및 Rh Typing, 교차 시험(Cross Matching), Coomb's Test 검사가 가능할 것	
라) 주산기 시설	· 신생아실을 갖출 것 · 분만실을 갖출 것	

나. 장비기준

1) 소아 응급실 전용장비

장 비 명	개 수 (단 위 : 개)	
	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	응급환자 진료구역
가) 제 세 동 기	1	
나) 인 공 호 흡 기	1	
다) 이 동 환 자 감 시 장 치	2	

라) 급속 혈액가온주입기	1	
마) 주입기(infusion pump)	1병상당 1	5병상당 1
바) 환자 감시장치	1병상당 1	5병상당 1
사) 부착형 흡인기	1병상당 1	
아) 초음파검사기	1	
자) 골강내 주사기구	1	
차) EKG	1	
카) Capnography	1	
타) ENT unit	1	
파) 보온포(가온·냉각기능)	1	
하) 소아용 네블라이저	3	

※ 소아환자를 위한 기구 및 소모품을 연령별로 확보하여야 함

2) 의료기관 내 확보해야 하는 장비

장 비	기 준
가) 뇌압 감시장비	24시간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, 응급환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
나) 인공심폐순환기(ECMO)	
다) 지속적 신 대체 요법(CRRT) 장비	
라) 인큐베이터	

다. 인력기준

1) 소아 응급실 전담인력

인 력	인 력 기 준	비 고
가) 의사	-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4명 이상(이 경우 전담의는 3년차 레지던트 이상을 의미한다) -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환자수가 15,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담전문의 1명을 추가 확보하고, 매 10,000명마다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을 추가 확보할 것	소아전문응급센터에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1명 이상 상주할 것
나) 간호사	-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 10명 이상 -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환자	소아응급환자 전용중환자실 및 입원실 인력과 별도임

	수가 15,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담간호사 3명을 추가 확보하고, 매 5000명마다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3명을 추가 확보할 것	
다) 그 밖의 인력	·간호사,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	·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전담할 것
	·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 인력 1명 이상	·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·별표 5의2 제3호다목라) 또는 별표 7 제3호다목3)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

2)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

인력	비고
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이상	소아전문응급센터 전담인력과 별도

라. 삭제 <2019. 12. 31.>